

#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교부용) 개정대비표

## 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</b> (교부용)</p> <p><b>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</b> ①~③ (기재생략)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<b>물품을</b>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</p> <p><b>신설</b></p> <p><b>제 9 조 (결제방법) ~ 제 17 조 (이의 제기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8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b> ① (기재생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금융결제원 B2B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19 조 (준거법)</b> (기재생략)</p>	<p><b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</b> (교부용)</p> <p><b>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</b> ①~③ (기재생략)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<b>물품 등을</b>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</p> <p><b>신설</b></p> <p>⑤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을 <b>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</b></p> <p><b>제 9 조 (결제방법) ~ 제 17 조 (이의 제기)</b> (기재생략)</p> <p><b>제 18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</b> ① (기재생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금융결제원 「B2B 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19 조 (준거법)</b> (기재생략)</p>	<p>문구수정</p> <p>“하도급법”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의무 반영</p> <p>문구수정 (관련 법령 추가)</p>

--	--	--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1월 30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